

의안번호	2200800
의 퇴 인	박덕흠의원
회 답 일	2024. 7. 5.
추 계 번호	24B1212

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조 5,418 억원(연평균 3조 1,084억원)으로 추계됨

○ (국 비) 7조 7,709 억원 (연평균 1조 5,542억원)

○ (지방비) 7조 7,709 억원 (연평균 1조 5,542억원)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급대상(안 제5조),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(안 제6조), 비용의 분담(안 제20 조) -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	31,174	31,129	31,084	31,039	30,991	155,418	31,084
국비(50%)	15,587	15,565	15,542	15,519	15,496	77,709	15,542
지방비(50%)	15,587	15,565	15,542	15,519	15,496	77,709	15,542

주: 1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.3% 수준으로 가정
 2. 농어업법인 등록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
 3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단가는 연간 12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4.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<u>최대 한 노력</u>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5조(지급대상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<u>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함)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</u> 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(지급금액 및 지급방법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,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</u>(제1항) <u>농어업인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함</u>(제3항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</u> (제4항)	의무·재량 규정
4	안 제9조(자료조사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(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함. 이하 “수급권”이라 한다)의 발생·변경·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<u>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음</u> (제1항)	재량규정
5	안 제20조(비용의 분담)	<u>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함</u>(제1항) 제1항에 따라 <u>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음)가 상호 분담함</u>.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·도의 조례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추계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	—	• 미대상 –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안 제5조(지급대상)	○	• 농어업인 기초연금 추계 –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안 제6조(지급금액 및 지급방법)		• 미대상(안 제6조제1항) –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(안 제2조(주관)), 이에 따라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안 제20조(비용의 분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안 제9조(자료조사 등)	—	• 미대상 –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현행 사업 실시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– 제정안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(또는 수급자)는 농어업경영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선정되며,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조사원 운영 및 관련 정보 관리, 공익직불금(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대상) 관련 현장점검 등의 사업 수행중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명</th><th>2022</th><th>2023</th><th>2024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업경영체등록 (6034-362)</td><td>26,655</td><td>27,825</td><td>28,979</td></tr> <tr> <td>–등록조사원 운영</td><td>20,493</td><td>21,396</td><td>22,373</td></tr> <tr> <td>–등록정보관리</td><td>4,616</td><td>4,803</td><td>4,980</td></tr> <tr> <td>–정확도관리</td><td>1,546</td><td>1,626</td><td>1,626</td></tr> <tr> <td>어업경영체 등록 (3440-362)</td><td>4,240</td><td>4,417</td><td>4,213</td></tr> <tr> <td>–어업경영체 등록</td><td>4,240</td><td>4,417</td><td>4,213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명	2022	2023	2024	농업경영체등록 (6034-362)	26,655	27,825	28,979	–등록조사원 운영	20,493	21,396	22,373	–등록정보관리	4,616	4,803	4,980	–정확도관리	1,546	1,626	1,626	어업경영체 등록 (3440-362)	4,240	4,417	4,213	–어업경영체 등록	4,240	4,417	4,213
사업명	2022	2023	20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농업경영체등록 (6034-362)	26,655	27,825	28,9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–등록조사원 운영	20,493	21,396	22,3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–등록정보관리	4,616	4,803	4,9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–정확도관리	1,546	1,626	1,6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업경영체 등록 (3440-362)	4,240	4,417	4,2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–어업경영체 등록	4,240	4,417	4,2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추계여부			
			사업명	2022	2023	2024
			-어업법인 관리시스템 구축	—	300	—
			직불제이행점검(1071-301)	21,603	25,054	28,421
			-현장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·지원	13,726	16,637	19,173
			-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조사	726	909	1,006
			-준수사항 관련 업무추진 및 부정수급 방지	6,651	7,508	8,182
			-실태조사 용역비	500	—	—
			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(정보화)(7032-507)			
			-농업경영체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	3,066	2,824	2,795
			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	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6조제1항¹⁾에 따라 농어업인 기초연금은 1인당 연간 120만원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연간 120만원 이상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 정확한 지급단가를 알 수 없으므로 법안에 정한 하한 금액을 연간 지급단가로 적용함
-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총액(기준선)을 비용추계 결과값에서 차감하지 않음
 -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중 이나, 총 지급액 및 지급대상(개인 또는 가구), 지급시기 등이 상이하여 추계

1) 안 제6조(지급금액 및 지급방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,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에 필요한 자료 가공에 한계가 있음

-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은 [참고자료]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참고

□ 본 추계에서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(경영주 및 경영주의 종사자)로 한정함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지칭하며, 각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,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지칭함
 - 여기서 다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,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지칭함

[표 2] 농어업경영체의 구분
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분)

구분			정의
농어업경영체			농업경영체 + 어업경영체
	농업경영체 (임업 포함)		농업인 + 농업법인
	농업인	농업인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
		농업법인	영농조합법인 + 농업회사법인
		영농조합법인	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(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)
		농업회사법인	농업 경영,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
	어업경영체		어업인 + 어업법인
	어업인	어업인	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·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
		어업법인	영어조합법인 + 어업회사법인
		영어조합법인	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(어업인 및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)
		어업회사법인	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·가공·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

자료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안 제5조제1항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²⁾한 ‘농어업인’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농어업법인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□ 제정안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배제 및 정지 사유, 수급권 상실 사유, 수당의 환수³⁾를 규정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가 부재하여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

- 예를 들어,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, 농업·임업·수산업직불금 등의 부정수급자, 국적 상실자 등은 추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

2)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융자·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“농어업경영정보”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농업경영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농지·축사·임야·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·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농업경영정보”라 한다)
2. 어업경영체: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어선·양식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·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3) 안 제5조(지급대상) ① (생략)

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에 따른 급여
2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
3.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에 따른 급여
4. 「별정우체국법」 제24조에 따른 급여

④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.

안 제11조(지급 정지)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1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접지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2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3. 농지·산지·어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안 제12조(수급권의 상실)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.

1. 사망한 때
2.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
3.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출

- 최근 6년(2019~2024.5월)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, 임업인 및 어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임산물 생산·채취 등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 구분없이 ‘농업경영체’로 등록되며,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임업인을 농업인과 별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시작함
 -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, 다음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됨
 - 예를 들어 농업인과 임업인, 농업인과 어업인, 임업인과 어업인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함

[표 3] 농업경영체(농업·임업) 및 어업경영체 등록 현황: 2019~2024년 5월말

(2024년 5월 말 기준, 단위: 명)

소관	구분		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농림축산 식품부	농업 경영체 등록	농업인	소계	2,446,568	2,478,680	2,571,670	2,554,638	2,554,935	2,538,006
			경영주	1,686,068	1,730,905	1,762,530	1,811,377	1,822,483	1,808,925
			경영주 외 농업인	760,500	747,775	745,140	743,261	732,452	729,081
		임업인 (산림청)	소계	3,812	8,662	13,409	65,160	67,901	68,996
			경영주	2,665	6,072	9,532	44,705	46,891	47,815
			경영주 외 농업인	1,147	2,590	3,877	20,455	21,010	21,181
해양 수산부	어업 경영체 등록	어업인	소계	81,798	86,320	89,332	92,890	95,407	94,295
			경영주	70,073	73,198	74,874	76,979	78,698	77,494
			경영주 외 종사자	11,725	13,122	14,458	15,911	16,709	16,801

주: 1.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,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된 것임

2. 임업인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,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제정안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(2020~2024.5월말)간 총인구 수 대비 등록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각 경영체 수를 산출

- 최근 5년(2020~2024.5월말)간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 5.03% 산출
 - － 이때,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중복 등록된 농업인과 임업인, 농업인과 어업인의 수를 제거함⁴⁾

[표 4]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수(중복제거) 평균 비율: 2019~2024.5월 (단위: 명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총 인구(A)		51,836,239	51,769,539	51,672,569	51,712,619	51,751,065	51,748,406
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(경영주 및 경영주 외 종사자)	농업인(B)	2,478,680	2,571,670	2,554,638	2,554,935	2,538,006	2,539,586
	임업인(C) ¹⁾	8,662	13,409	65,160	67,901	68,996	44,826
	－ 농업인 및 임업 인 중복등록자 (D)	5,998	8,888	53,570	55,211	55,706	35,875
	어업인(E)	86,320	89,332	92,890	95,407	94,295	91,649
	－ 농업인 및 어업 인 중복등록자 (F) ²⁾	34,456 ³⁾	35,749 ³⁾	35,512 ³⁾	35,516²⁾	35,281 ³⁾	35,303
	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(중복 제거) (I=(B+C+E)-(D+F))	2,533,208	2,629,774	2,623,606	2,627,516	2,610,310	2,604,883
총 인구 대비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비율(J=I/A)		4.89%	5.08%	5.08%	5.08%	5.04%	5.03%

- 주: 1) 임업인의 경우 '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,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
- 2)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전수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것임(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협업)
- 3) 2020~2022년 및 2024년의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, 2023년 기준 농업인 등록자(2,554,935명) 대비 농어업인 중복등록자(35,516명)의 비율(1.39%)을 각 연도 농업인 수에 곱하여 산출함

자료: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.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, 2023.12.
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1BPA001&conn_path=I3
2.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4) 다만, 어업인과 임업인 간 중복자 수는 자료의 한계로 제거하지 못하였으나,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임업과 어업에 중복하여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-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에서 발표된 총 인구 수에 5.03%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산출함

[표 5]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출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총 인구(A, 명)	51,609,121	51,534,551	51,459,877	51,384,052	51,305,713
총인구 대비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비율(B)	5.03%				
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(C=A×B, 명)	2,597,872	2,594,119	2,590,360	2,586,543	2,582,599

주: 최근 5년(2020~2024.5월말)간 총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 수(중복 제거)의 평균 비율(5.03%)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
 자료: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 및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단가

- 안 제6조제1항⁵⁾에 따라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단가는 1인당 연간 120만원으로 가정
 -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급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다. 분담률 등

-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함
 - 안 제20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
 - －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비 지원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분담률을 알 수 없으므로 국비 대 지방비의 분담률을 50:50으로 가정함

5) 안 제6조(지급금액 및 지급방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,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추계결과

- 추계 결과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조 5,418억원(연평균 3조 1,084억원)으로 추계됨
- (국 비) 7조 7,709 억원 (연평균 1조 5,542억원)
 - (지방비) 7조 7,709 억원 (연평균 1조 5,542억원)

[표 6]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천명,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 (A, 천명)	2,598	2,594	2,590	2,587	2,583	—	—
연간 지급액 (B, 백만원)	1.2	1.2	1.2	1.2	1.2	—	—
추가재정소요 (C=A×B, 억원)	31,174	31,129	31,084	31,039	30,991	155,418	31,084
국비 (D=C×50%)	15,587	15,565	15,542	15,519	15,496	77,709	15,542
지방비 (E=C×50%)	15,587	15,565	15,542	15,519	15,496	77,709	15,542

주: 1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.3% 수준으로 가정
 2. 농어업법인 등록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
 3.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단가는 연간 12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4.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지급대상자 수, 지급단가,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(2024년 6월 기준)

구분	지자체	지급 시작	지급대상	지급규모	지급방법
농업인 수당	경기도	'21~	농업인	'21년~: 농업인당 5만원/월 (60만원/년)	지역화폐
	강원도	'21~	농림어가	농가당 70만원/년	지역화폐
	충청북도	'22~	농가	'22년: 농가당 50만원/년 '23~: 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충청남도	'20~	농업인	'20~'21년: 농가당 80만원/년 '22년~: 1인 농가 80만원/년, 2인 가구 이상 45만원/1인	지역화폐
	전라북도	'20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전라남도	'20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경상북도	'22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경상남도	'22~	농가	농가당 30만원/년 (공동경영주 60만원/년)	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(신용·체크카드)
	제주도	'22~	농업인	농업인당 40만원/년	지역화폐
	울산광역시	'23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현금 지급
	광주광역시	'23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세종특별자치시	'23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인천광역시	'24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현금 지급
어업인 수당	인천	'24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현금, 지역화폐 (카드, 상품권 등)
	경기(화성시)	'23	어민	어민당 60만원/년	
	전라북도	'21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전라남도	'20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충청북도	'23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충청남도	'20	어가	1인 어가 80만원/년,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/1인	
	강원도	'21	어가	어가당 70만원/년	
	경상북도	'22	어가	가구당 60만원/년	
	경상남도	'22	어민	경영주당 30만원/년	
	울산	'24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제주도	'22	어민	어민당 40만원/년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(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)